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674호 2022년 10월 6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3호) 5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4호) 42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5호) 110
- 선학지구 대구환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6호) 112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7호) 114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8호) 117
- 개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9호) 121
- 법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90호) 123

■ 공 고

-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70호) 126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88호) 127
-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92호) 128

시 군

■ 고 시

- 김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2-125호) 130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2-183호) 132

■ 공 고

- 건설기계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문경시 공고 제2022-1412호) 136
- 고령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 완료 공고
(고령군 공고 제2022-1119호) 140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443호) 143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3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에 따라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그룹”이란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반시설 중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형별 관리그룹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관리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점검진단등의 구분)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정기점검) : 소관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정밀점검) : 소관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3. 긴급안전점검(긴급점검) : 소관 기반시설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4. 정밀안전진단 : 소관 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5. 성능평가 : 소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6. 일상점검 : 소관 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외관상태의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① 기반시설의 관리등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관리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목표등급의 설정) ① 기반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등급은 별표 5와 같다.

관리주체는 제1항의 목표등급으로 소관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조치의 보고)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등급이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소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11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연차별 유지관리계획 및 소요 예산을 법 제 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반시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요도,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우선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서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으로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 등이 시급한 경우
2. 소관 기반시설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노후화가 진전되어 사고 예방 등 을 위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 의 구조상 도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와 같다.

⑥ 관리주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지관리 우선순위 선정이 포함된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실시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제10 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그 외 소관 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 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준용)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나 기반시설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준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최소유지관리기준 대상시설(제3조 관련)

구분		범위	대상시설
교통 시설	도로	도로시설	교량, 터널, 보도육교, 지하차도, 옹벽, 절토사면, 차도(포장)
	항만	항만시설(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계류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어항시설(지방어항)	계류시설, 외곽시설
유통 · 공급시설	수도공급 설비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취수시설, 저수시설, 도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공동구	공동구	공동구 본체
방재시설	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위임)	수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갑문, 댐, 하구둑
	저수지	저수지	저수구역,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기전시설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하수도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별표 2] 기반시설의 유형별 관리그룹(제4조 관련)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로	일상관리 시설	차도 (포장)	· 일반국도(동지역),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교량	1종
	2종	· 단경간교 연장 50m이상, 다경간 100m 이상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3종	· 연장 20m이상 100m미만 시설로 공용기간 10년 경과된 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이상 교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터널	1종		· 연장 1000m이상 · 3차로 이상
		2종		· 고속 및 일반국도 상 도로터널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
		3종		· 준공 후 10년이 경과,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시설	
	지하차도	1종	· 터널연장 500m이상 지하차도	
		2종	· 터널연장 100m이상 지하차도	
	중점관리 시설	교량	1종	· 현수, 사장, 아치, 트러스교 형식 시설 · 최대 경간장 50m 이상(다경간) · 연장 500m 이상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2종	· 단경간교 연장 50m이상, 다경간 100m 이상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3종			· 연장 20m이상 100m미만 시설로 공용기간 10년 경과된 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이상 교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1종			· 연장 1000m이상 · 3차로 이상	
2종			· 고속 및 일반국도 상 도로터널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	
3종			· 준공 후 10년이 경과,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종	· 연장 100m 미만 시설로 공용기간 10년 경과 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2종	· 높이 5m이상의 연장이 100m이상	
			3종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및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으로 공용기간 10년 경과된 시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옹벽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2종	· 연직높이 30m, 연장 100m 이상 시설
					3종
		절토사면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3종	· 공용기간 10년 경과된 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보도육교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1종	· 갑문, 1,000m 이상 방파제
		항만	항만시설	외곽시설	2종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1, 2, 3종 이외의 외곽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류시설	1종	· 20만톤급 이상 선박 하역시설(원유부이식 계류시설) ·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시설		
			2종	· 1만톤급 이상 원유부이식 시설 · 1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또는 중력식 시설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1, 2, 3종 이외의 계류시설 - 안벽, 돌핀, 잔교, 소형선부두, 부잔교, 선착장, 램프		
		임항 교통 시설	1종	· 도로교량 1종 시설물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고속철도교,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2종	· 도로교량 2종 시설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 폭 6m 이상 연장 1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3종	·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이상 100m미만인 도로교량 ·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인 교량 · 연장 100m 미만인 철도교량		
			기타	· 제1, 2, 3종 이외의 항만시설(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어항	중점관리 시설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계류시설	· 안벽, 잔교, 부잔교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관리 시설	외곽시설	· 도류제, 호안, 돌제		
		계류시설	· 소형선부두, 선양장, 선착장, 선류장, 도선장, 물양장		
수도 공급 설비	정수시설	정수장	1종	·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배수지	2종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댐/저수지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취수장			
	송수시설	가압장			
		송수 펌프장			
	상수관로	도수관로		1종	·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2종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 배수관로	
공동구	공동구	본체	2종	· 공동구	
하천	중점 치수 시설	수문(하천 수문) 및 통문	2종	· 1종시설물에 해당 않고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제방(호안 포함)	2종	· 국가하천의 제방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지방하천의 제방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보	1종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종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배수펌프장	2종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하천	기타관리 시설	갑문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댐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하구둑	1종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2종	· 1종시설물에 해당 않고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3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저수지	1종 저수지	저수구역	· 저수지(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저수 용량 30만m ³ 이상)	제방	· 제체	
		여수로	· 물넘이(접근수로), 방수로(감세공)	
		취수시설	· 사통(취수탑), 복통	
		기전시설	· 기계시설, 전기시설	
	2종 저수지 (총저수 용량 30만m ³ 미만)	저수구역	· 저수지(제)	
		제방	· 제체	
		여수로	· 물넘이(접근수로), 방수로(감세공)	
		취수시설	· 사통(취수탑), 복통	
		중점조사 대상	하수관로	·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높음” 이상
			공공하수 처리시설	·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높음” 이상, 안전등급 미흡 (D) 또는 불량(E) 시설
일반점검 대상		하수관로	· 하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비고

1. “1종”, “2종”, “3종” 등 종시설물 및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제 16조를 따른다.

[별표 3] 기반시설 관리수준(제5조 관련)

1.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그룹을 설정한 기반시설 : 도로, 공동구, 하천

가. 점검진단등의 구분

구분	내용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이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성능평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나. 점검진단등의 범위

구분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제1종시설물	○	○(필요시)	○	○	○
제2종시설물	○	○(필요시)	○	×	○
제3종시설물	○	○(필요시)	△	×	×
법정의 시설물	○	○(필요시)	×	×	×

다.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라. 점검진단등 실시자의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 안전 점검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구 분		자 격 요 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2. 정밀 안전 점검 및 긴급 안전 점검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 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 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 안전 진단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 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

구분	자격 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세부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이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시설물안전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기반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점검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그룹을 설정한 기반시설

① 항만

가. 점검진단등의 범위

구분	점검진단등					비고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긴급 안전점검	성능평가	
외곽 시설	제1종	○	○	○	○	「시설물 안전법」
	제2종	○	○		○	
	제3종	○			○	
	기타시설	○	○		○	「항만법」
계류 시설	제1종	○	○	○	○	「시설물 안전법」

구분		점검진단등					비고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긴급 안전점검	성능 평가	
	제2종	○	○		○	○	「항만법」
	제3종	○			○		
	기타시설	○	○		○		
임항 교통 시설	제1종	○	○	○	○	○	「시설물 안전법」
	제2종	○	○		○	○	
	제3종	○			○		
	기타시설	○	○		○		「항만법」

나.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구분	실시시기
정기 안전점검	<p>가. 항만시설(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항만 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p> <p>나. 가목에 따른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기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p>
긴급 안전점검	<p>가. 자연재해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p> <p>나. 항만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p> <p>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p>
정밀 안전점검	<p>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p>

구분	실시시기
	<p>필요하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등 수역시설과 관련하여 수중(水中)의 침몰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항행과 정박(碇泊)에 지장이 있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p> <p>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다음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p> <p>1) 방파제, 파제제,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 한다), 돌핀(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p> <p>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p> <p>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 6년마다 1회 이상</p> <p>2)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교, 선착장</p> <p>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 10년 이내</p> <p>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 10년마다 1회 이상</p>

비고

1.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항만시설, 철거 예정인 항만시설,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② 어항

가. 점검진단등의 범위

구분		점검진단등					비고
		정기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성능 평가	
중점 관리 시설	외곽 시설	○	○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계류 시설	○	○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안벽, 잔교, 부잔교
일반 관리 시설	외곽 시설	○	○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도류제, 호안, 돌제
	계류 시설	○	○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소형선부두, 선양장, 선착장, 선류장, 도선장, 물양장

나.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구분	실시시기
정기 안전점검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긴급 안전점검	어항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정밀 안전점검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1) 중점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구분	실시시기
	(2) 일반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년마다 1회 이상 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고

1.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수도공급설비

가. 점검진단등은 정기평가, 정밀평가, 진단평가로 구분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진단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정기평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정밀평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반 기술진단
진단평가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성능평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진단

나.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실시자의 자격

1) 정기평가

구분		세부사항		
정밀 평가	실시시기	연 1회 시행		
	시행주체	시설물 관리주체		
	시행내용 (보고서 포함사항)	1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의 개요	
		2	•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3	•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4	• 종합결론	
	등급	• 기반시설 정밀평가 결과에 따라 A(우수) ~ E(불량) 등급으로 분류		
	실시자 자격	• 시설물 안전법, 수도법에 제시된 자격에 부합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관련법규	
		시설물 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별표5(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3항, 별표6(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별표10(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별표6(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4호(건설기술인의 범위) 	

구분		세부사항	
		수도법	•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자체기술진단),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및 별표8(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결과제출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결과 제출	

2) 정밀평가

구분		세부사항		
정밀 평가	실시시기	3년 1회 시행		
	시행주체	시설물 관리주체		
	시행내용 (보고서 포함사항)	1	• 시설물의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3	•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4	• 보수·보강 방법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급	• 기반시설 정밀평가 결과에 따라 A(우수) ~ E(불량) 등급으로 분류		
	실시자 자격	• 시설물 안전법, 수도법에 제시된 자격에 부합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관련법규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구분		세부사항	
	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별표5(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3항, 별표6(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별표10(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별표6(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4호(건설기술인의 범위)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자체기술진단),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및 별표8(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결과제출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결과 제출		

3) 진단평가

구분		세부사항		
진단 평가	실시시기	5년 1회 시행		
	시행주체	시설물 관리주체		
	시행내용 (보고서 포함사항)	1	• 시설물의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성능평가의 개요	
		2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3		•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구분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 사용성 평가 • 시설물의 종합성능평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 방법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급	• 기반시설 정밀평가 결과에 따라 A(우수) ~ E(불량) 등급으로 분류	
실시자 자격		• 시설물 안전법, 수도법에 제시된 자격에 부합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관련법규	
	시설물 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법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별표5(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3항, 별표6(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별표10(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별표6(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4호(건설기술인의 범위) 	
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자체기술진단),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및 별표8(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결과제출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결과 제출	

④ 저수지

가. 점검진단등의 구분, 범위, 실시시기, 실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시설	실시시기 및 주기
정기점검	1종·2종 저수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 전에 실시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백만 ^m 이상	①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②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긴급점검	1종·2종 저수지	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저수지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백만 ^m 이상	저수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정밀점검	1종·2종 저수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안전등급이 종합 D등급 이하인 경우 · 안전등급이 일부 부재만 D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부재만 정밀점검 실시. 필요시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가능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백만 ^m 이상	①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②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③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천만 ^m 이상	①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②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③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천만 ^m 미만	5년에 1회 이상

구분	대상시설	실시시기 및 주기
	2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만 ^m 이상	10년에 1회 이상
내진성능평가	1종 저수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수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나.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

구분	자격요건	교육이수
정기점검, 긴급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기계·전기·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저수지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교육 이수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추가 이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비고

1.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로 실시한다.
2. 긴급점검은 저수지의 안전상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3. 저수지 분야 점검진단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을 따른다.

⑤ 하수도

가. 점검진단등의 구분

구분	내용
일반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진단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진단 행위를 말한다.

나. 점검진단등의 범위, 실시시기

관리그룹		일반점검	위험도평가	정밀안전진단	기술진단
하수관로	일반점검대상	1회 이상/년	1회 이상/년	5년에 1회 이상	5년마다
	중점조사대상	1년에 3회이상	-	4년에 1회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점검대상	1회 이상/년	1회 이상/년	5년에 1회 이상	5년마다
	중점조사대상	1년에 3회이상	-	4년에 1회 이상	

다.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

구분	자격요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구분	자격요건
기술진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3호의 진단대행기관

비고

1. 하수도 분야 점검진단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및 「시설물안전법」을 따른다.

환경기초시설 위험도평가 방법

1. 위험도평가 방법

- 환경기초시설의 위험도는 ‘피해 규모(영향도)’와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파손, 손상 등)’의 곱셈으로 산출하며,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text{위험도} = \text{피해 규모(영향도)} \times \text{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 ① 피해 규모(영향도) 검토 : 위험도 피해 규모 또는 영향도를 산정
- ②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 : 위험도 발생확률 산정

(1) 피해 규모(영향도)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파손이나 손상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규모는 ‘영향도’로 평가한다. 관로 시설의 피해 규모(영향도)는 ‘기능상 중요한 시설’, ‘사회적 영향이 큰 시설’, ‘사고 시 대처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열화가 진행되기 쉬운 시설/열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시설’ 등의 시설 특성을 종합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 피해 규모(영향도)는 평가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집계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다.
- 영향도는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 하수관로 용도(지선/간선), 관경, 처리면적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사용연수, 하수처리구역면적 등
 - ‘기능상 중요한 시설’, ‘사회적 영향이 큰 시설’, ‘사고 시 대처하기 어려운 시설’ 등

(2)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파손 및 손상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는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관련 정보의 축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인자와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 정보 축적 초기단계에서는 경과연수 등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에는 상태조사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 등의 데이터가 축적된 단계에서 노후도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방법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 환경기초시설의 파손 및 손상 발생확률의 평가는 한 가지 인자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조합해서 실시해야 보다 효과적이다.

2. 위험도평가 결과

- 위험도 평가는 ‘위험도 매트릭스(간략법)’ 방법과 ‘위험도 매트릭스(상세법)’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 위험도 매트릭스(간략법) : 위험이 발생할 경우의 피해 규모(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발생확률을 각각 순위화해 각 항목이 만나는 지점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
 - 위험도 매트릭스(상세법) : 피해 규모(영향도)와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의 곱셈식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
- 기반시설 관리계획 최초 관리계획 기간(2025년)까지는 ‘위험도 매트릭스(간략법)’에 따라 조사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최초 관리계획 기간 이후 부터는 각 지자체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정도에 따라 ‘위험도 매트릭스(상세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관리계획 기간이더라도 지자체의 축적된 자료와 의지에 따라 ‘위험도 매트릭스(상세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별표 4] 기반시설 관리등급 기준(제8조 관련)

1. 도로(중점관리시설), 항만, 어항, 공동구, 하천(중점치수시설), 저수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2. 도로(중점관리시설), 하천(기타관리시설)

성능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

성능등급	시설물의 상태
	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비고

- 도로 분야 일상관리시설인 차도(포장)의 경우 등급구분없이 일상점검을 통한 상시 관리를 목표로 한다.

3. 수도공급설비

가. 정기평가 및 정밀평가 등급

등급	세부사항	정기안전점검 적용등급	정밀안전점검 적용등급	일반기술진단 적용등급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A (우수)	A (우수)	우수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B (양호)	B (양호)	양호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	C (보통)	C (보통)	보통

등급	세부사항	정기안전점검 적용등급	정밀안전점검 적용등급	일반기술진단 적용등급
	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D (미흡)	D (미흡)	불량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E (불량)	E (불량)	심각

나. 진단평가 등급

등급	세부사항	정밀안전진단 적용등급	성능평가 적용등급		전문 기술진단 적용등급
			안전성능	내구성능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A (우수)	A (우수)	A (우수)	우수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B (양호)	B (양호)	B (양호)	양호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	C (보통)	C (보통)	C (보통)	보통

등급	세부사항	정밀안전진단 적용등급	성능평가 적용등급		전문 기술진단 적용등급
			안전성능	내구성능	
	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D (미흡)	D (미흡)	D (미흡)	불량
E (불량)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E (불량)	E (불량)	심각

4. 하수도

구분	관리 등급	상태	시설물의 상태	정비 시급성	
하수관로	1	매우 좋음	• 매우 좋은 상태	낮음	
	2	좋음	•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3	보통	• 구조적 노후화 진행 •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통	
	4	나쁨	•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음	
	5	매우 나쁨	•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 높음	
공공 하수	운영적 (처리	A~B	양호	• 처리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유지관리가 불편한 상태	낮음

구분	관리 등급	상태	시설물의 상태	정비 시급성	
하수관로	1	매우 좋음	• 매우 좋은 상태	낮음	
	2	좋음	•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3	보통	• 구조적 노후화 진행 •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통	
	4	나쁨	•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음	
	5	매우 나쁨	•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 높음	
처리 시설	성능) 상태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C	보통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상태 • 장기간 가동으로 성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 예비가 없는 상태	보통
		D	나쁨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	높음
	구조적 상태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낮음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낮음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보통

구분	관리 등급	상태	시설물의 상태	정비 시급성
하수관로	1	매우 좋음	• 매우 좋은 상태	낮음
	2	좋음	•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3	보통	• 구조적 노후화 진행 •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통
	4	나쁨	•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음
	5	매우 나쁨	•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 높음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높음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매우 높음

[별표 5] 기반시설 목표등급(제9조 관련)

분야		목표등급
도로		중점관리시설 C등급(보통) 이상 관리
항만·어항·수도공급설비· 공동구·저수지·하수도		C등급(보통) 이상 관리
하천	국가하천	B등급(양호), C등급(보통) 이상 관리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위임시설)	C등급(보통) 이상 관리

비고

1. 도로 분야 일상관리시설인 차도(포장)의 경우 일상점검을 통한 상시 관리를 목표로 한다.
2. 국가하천의 목표등급은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04호, 2021.12.31) 제8조 참조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4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기반시설 성능개선 공통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안전성능”이란 기반시설의 외관상 결함 및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에 저항하는 성능을 말한다.
8.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9. “사용성능”이란 기반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10. “성능목표”란 기반시설의 사용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11.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12.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 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내용)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시한다.

1. 성능평가 실시방법
2.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검토대상 기반시설 선정
3. 성능개선 대상 유형의 선정
4. 선정된 대상 기반시설별 성능개선 사업적합성 평가 방법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능개선기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되, 이 기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능평가의 실시

제4조(성능평가 일반) ① 법 제12조에 의해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기반시설의 노후화, 기준의 변화, 사용성의 변화 등 시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

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또는 성능개선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제8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등)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준공도서 및 시공 관련 자료
2. 기반시설의 점검진단 등 결과
3.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증축·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
4.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제6조(성능평가 절차) 성능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1와 같다.

제7조(성능평가실시자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능평가 실시자는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의 관리수준을 준용한다.

제8조(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성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 성능평가 대상
2. 기반시설 성능평가 실시자 및 세부일정
3. 기반시설 성능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4.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5. 기반시설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6.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성능평가의 방법) ①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별표 2에 따라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2. 기반시설의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평가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 방법, 절차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평가방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별도의 평가기준·항목·방법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항목·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1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평가 결과의 정리) ①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에 따라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개별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시설별, 부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분석하여 기반시설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결과의 보고) ① 관리주체는 별표 3의 표준목차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평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종합성능등급이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서 선정한 목표등급 미만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개량·개축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종합성능등급이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한 목표등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목표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개량·개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13조(검토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 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조사표(별표 4)
2. 성능평가 결과
3.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4. 시설물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검토대상의 유형 등) ①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가. 기반시설 수명이 별표 5에 따른 내용연수에 도래하여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점검진단 등 결과가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목표등급 미만(도로, 항만, 어항,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저수지, 하수도 관리등급 : D, E등급)으로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 시설의 일부를 해체폐기 후 물리적·기능적으로 시설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의 경우 '증축' 도 포함)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③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예시는 별표 6과 같다.

제4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15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1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8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외 기술성 평가항목은 별표 8을 따른다.

제17조(경제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대상사업의 시민안전과 편리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Cost Analysi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기준변화,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거나, 다수의 성능개선 대안이 있을 경우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시행

2. 수요·효과·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공사비 등 투자비만 고려) 시행

③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유지관리비(성능개선 전과 후 모두 포함된다)
2.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3.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④ 경제성 평가의 비용은 성능개선 사업 미시행(유지관리)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시 기존 시설부분을 제외한 비용과 성능개선시의 비용 증가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가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 시설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경제성 평가시 모든 비용은 동일 시점(기준연도)을 기준으로 할인하고 분석기간은 일반적으로 별표 5 기반시설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⑥ 그 외에 경제성 평가항목은 별표 8을 따른다.

제18조(정책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2. 중요도(시설물 규모(종별))
3. 재해발생빈도(최근 5년간 시설 안전 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4. 이용자 민원(최근 5년간 시설 안전 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5. 성능개선 총당금 마련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설정하는 경우 관리주체 등의 관리목표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평가)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계량화한다.

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2. 복수 시설공사를 포함한 성능개선사업의 경우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평가점수를 사업비와 시설중요도를 기준으로 가중 합산하여 도출

[종합평가점수 = a×노후화 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b×기준변화 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c×사용성변화 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여기서 a+b+c=1)]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관리주체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며,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제20조(성능개선대책의 수립) ① 제19조에 따라 성능개선 시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성능개선사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 현황 및 점검진단 등의 결과(계획 및 소요예산 포함)
2. 직전 5년간 시설유형별 성능개선 실시 결과 및 성능변화 효과(관리등급 변화 등)
3. 시설유형별 성능개선기준 적용 검토 보고서
4. 향후 5년간 연차별 성능개선 계획 및 소요예산

제5장 보 칙

제21조(준용) 관리주체는 적용범위와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성능개선기준이나 기반시설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준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반시설 성능평가 절차(제6조 관련)

절 차	주 요 내 용
성능평가 대상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관리그룹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 선정 • 전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본조사 가능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지역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자료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준공도서, 보수·보강·증축·개량공사 관련 자료 - 과거 안전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자료 등
성능목표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만족해야 할 성능목표를 설정 • 성능평가 실시계획에서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성능, 안전관리 목표, 예산 여건등을 고려하여 결정
성능평가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부재 평가) 개별부재에 대한 성능평가지수, 성능평가등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부재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시험·검사·평가 시행 - 항목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및 개별부재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 산정 • (결과분석) 지역별·부재별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부재 평가결과를 평가시설의 특성에 맞게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 • (종합평가)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하고,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지역·부재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분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개별시설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시설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 • 개별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결과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부재별·성능평가 지수·등급 산정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종합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지역·시설 제시 </div> </div>
유지관리 전략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등급 미만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지역별·부재별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검토 • 기반시설 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시
종합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시행방안(연차별 계획, 예산확보 등)

비고

1. 최초 성능평가 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2] 기반시설 성능등급 기준(제9조, 제10조 관련)

1. 안전성능등급

등급	안전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비고

1. “안전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시설물에 주어지는 내적하중(자중) 및 외적 하중(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붕괴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2. 내구성능등급

등급	내구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비고

1.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3. 사용성능등급

등급	사용성능 수준
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다.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마.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비고

1.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4. 종합성능등급

등급	종합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협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비고

1. “종합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손상에 저항하는 내구성능과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별표 3] 성능등급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제11조 관련)

- 목 차 -

가. 서두

나. 성능등급평가 개요

다. 자료수집 및 분석

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선정

마. 기반시설의 평가부문별(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바. 성능등급평가 결과의 시설별, 부재별 분석

사. 기반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아. 기반시설 유지관리 전략 제안

자. 종합결론

차. 부록

[별표 4] 성능개선 대상 시설현황조사표(제13조 관련)

1. 시공 단계

사업명(시설명)	공사기간 (계약시점)	준공년도	공사비 (계약시점)	사업방식	계획단계사업효율 (수요, B/C 등)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시설물위치	제원	구조형식	설계하중

2. 운영 단계

유지관리단계 사업명(시설명)	유지관리 항목 (부위, 부재)	유지관리비 (연간)	관리방식 (직영, 위탁)	관리내용 (보수, 보강)	관리등급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성능개선 사업명(시설명)	성능개선 항목 (부위, 부재)	공사기간 (계약시점)	공사비 (계약시점)	공사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별표 5] 기반시설 내용연수(제14조 관련)

구조물 종류		기준내구연한(년)	비고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절토사면, 보도육교	1,2,3종시설물 및 기타 30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차 도로시설 관리계획 제1차 기반시설 관리기본계획
	포장	20년	기획재정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기준
항만 (어항 포함)	방파제 등 외곽시설	50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제1차 항만시설 관리계획 제1차 어항시설 관리계획
	계류시설 - 콘크리트	40년	
	계류시설 - 강재	25년	
수도 공급 설비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3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기준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30년	
	PVC관, PE관	20년	
	아연도강관	10년	
공동구	본체	40년	제1차 공동구 관리계획
	점용시설	약 20년	
하천	시설물	30년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저수지		70년	제1차 저수지 관리계획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2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기준
		그 밖의 수처리시설: 30년	
		중계펌프장시설: 30년	
	하수관거	구조물시설(BOX등): 30년	
		흙관, PC관, VR관, PE관: 20년	

[별표 6]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 예시 : 성능개선 유형별 분류 포함(제14조 관련)

구 분			사업 예시	
시설유형	사업유형	시설물단위		
교통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 기준 내구연한(공용연수 30년) 초과 - 관리등급 D,E 시설(도로, 항만(어항))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 설계당시보다 기준상향 - 내진성능보강, 재해예방시설, 재난방송 수신설비 - 항만(어항)시설의 기준변화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교통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 주변여건 및 교통(선박운항)수요 변화
유통 · 공급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 기준 내구연한(공용연수 30년) 초과 - 관리등급 D,E 시설(수도공급설비, 공동구)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 설계당시보다 기준상향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수용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 사용성 평가결과 및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방재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 기준 내구연한(공용연수 30년, 저수지 70년) 초과 - 관리등급 D,E 시설(하천, 저수지)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 설계당시보다 기준상향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치수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용량증설 - 시설의 수요, 서비스수준 상향요구
환경기초 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 기준 내구연한(공용연수 30년) 초과 - 관리등급 D,E 시설(하수도)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 설계당시보다 기준상향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수용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 사용성 평가결과 및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별표 7] 기반시설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제15조 관련)

1. 도로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유형	항목	배점	평가항목(안)
노후화 성능개선 (a)	기술성	60	·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노후도(내용연수 고려)
	경제성	20	· 비용절감효과 = $\frac{\text{연간 성능개선비용}}{\text{연간 유지관리비}}$
	정책성	20	·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 이용자 민원 · 시설물 중요도(종별) · 재원조달 가능성 ·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성능개선 총당금 마련)
기준변화 성능개선 (b)	기술성	40 (0)	·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기준변화 정도 SCR(Standard Change Ratio)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정책성	60 (100)	·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 이용자 민원 · 시설물 중요도(종별) · 재원조달 가능성 ·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성능개선 총당금 마련)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c)	기술성	10 (0)	·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등급 · 노후도(내용연수 반영)
	경제성	50	· 비용절감효과 = $\frac{\text{연간 성능개선비용}}{\text{연간 유지관리비}}$
	정책성	40 (50)	·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 이용자 민원 · 시설물 중요도(종별) · 재원조달 가능성 ·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성능개선 총당금 마련)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성능평가가 행해지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점검진단 보고서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평가시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안의 배점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시 점수 임.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평가 (30)	성능평가 (30)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각각 15점					
		정밀안전 점검·진단 (30)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노후도 (30)	· 노후도(사용기간/내용연수) - 내용연수 : 별표5 참고						
경제성 (20점)	비용절감효과 (2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정책성 (20점)	정책일치성 (4)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중요도 (2)	시설물 규모 (종별)						
	재해발생빈도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이용자 민원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성능개선 총당금 (10)	점수	0	4	6	8	1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용연수는 별표 5를 따른다.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40점)	성능평가 (20)	성능평가 (20)	· 안전성능 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 style="text-align: center;">C</td>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 style="text-align: center;">E</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able>					등급	A	B	C	D	E	점수	0	5	10	15	20
	등급	A	B	C	D	E												
점수	0	5	10	15	20													
정밀안전 점검·진단 (20)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 style="text-align: center;">C</td>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 style="text-align: center;">E</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able>					등급	A	B	C	D	E	점수	0	5	10	15	20
등급	A	B	C	D	E													
점수	0	5	10	15	20													
		기준변화정도 (20)	· SCR(Standard Change Ratio)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 예시)내진성능변화 : 지진가속도변화율 0.057g / 0.05g = 1.1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SCR</td> <td style="text-align: center;">SC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SCR<1.1</td> <td style="text-align: center;">1.1≤SC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2≤SC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able>					SCR	SCR<1.0	1.0≤SCR<1.1	1.1≤SCR<1.2	1.2≤SCR	점수	0	10	15	20		
SCR	SCR<1.0	1.0≤SCR<1.1	1.1≤SCR<1.2	1.2≤SCR														
점수	0	10	15	2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불일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진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확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able>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3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2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1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able>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피해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2회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r> </table>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2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3회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able>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성능개선 총당금 (30)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기술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 (외력, 하중 등)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100점)	정책일치성 (17)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7	12	17
	중요도 (10)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3	5	8	10	
	재해발생빈도 (13)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7	13	
	이용자 민원 (10)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6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5	10	
	성능개선 충당금 (5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20	30	40
합계	100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 (외력, 하중 등)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10점)	성능평가 (10)	성능평가 (10)	· 사용성능 등급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정밀안전 점검·진단 (10)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4)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2	3	4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4)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2		4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성능개선 총당금 (2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 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단일 시설물의 증설확장에 대한 성능개선 평가는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 도로의 증설확장이 반영된 별도의 추진계획 또는 상위 계획을 따른다.
4. 옹벽, 절토사면은 성능평가 지침 중 사용성능등급 비대상 시설로 사용성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8)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8	
	중요도 (7)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3	5	7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7)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4	7			
성능개선 총당금 (2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단일 시설물의 증설확장에 대한 성능개선 평가는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 도로의 증설확장이 반영된 별도의 추진계획 또는 상위 계획을 따른다.
4. 옹벽, 절토사면은 성능평가 지침 중 사용성능등급 비대상 시설로 사용성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2. 항만, 어항

〈검토 대상 유형별 구분〉

유형	구분	항만사업(예시)
노후화 성능개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항만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시설 : 노후 외곽시설 보강사업 등 •계류시설 : 개축(Port Renewal), 노후 계류시설 보강사업 등
기준변화 성능개선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시설 : 재해안전항만구축(재해취약지구정비) 등 •계류시설 : 내진성능보강 등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항만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 또는 변화되어 시설규모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류시설 : 선석 기능 재배치, 안벽증설(선박대형화 등) 등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유형	항목	배점	평가항목(안)	
			외곽시설	계류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기술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점검 등급 ·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정책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 시설물 중요도(중별) ·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민원 ·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총당금 마련)

유형	항목	배점	평가항목(안)	
			외곽시설	계류시설
기준변화 성능개선	기술성	40 (0)	· 정밀안전점검 등급 · 기준변화 정도(SCR) (변경기준/기준기준 비율)	·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 기준변화 정도(SCR) (변경기준/기준기준 비율)
	정책성	60 (100)	·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 시설물 중요도(종별) ·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 이용자 민원 ·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총당금 마련)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	10 (0)	-	·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등급 · 노후도(내용연한 반영)
	경제성	50	-	· 비용절감 분석(C.R)
	정책성	40 (50)	-	·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 시설물 중요도(종별) ·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 이용자 민원 ·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총당금 마련)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의 배점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시 점수 임.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평가 (30)	성능평가 (30)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③사용성능 각각 10점				
			등급	A	B	C	D
		점수	4	6	8	10	10
	정밀 안전점검 (30)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12	18	24	30	30	
	노후도 (30)	·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 - 내구연한 : 방과제 50년 등 계류시설 콘트리트 40년, 강재 25년 등					
		노후도	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점수	10	15	20	25	3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4)	시설물 규모 (중별)					
		구분	기타	3중	2중	1중	
		점수	1	2	3	4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4)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2	4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성능개선 총당금 (2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 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기술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신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구연한은 별표 5를 따른다.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적용기준		평가 방법				
기술성 (40)	성능평가 (20)	성능평가 (20)	· 안전성능 등급				
		정밀 안전점검 (20)	· 안전성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기준변화정도 (20점)	· SCR(Standard Change Ratio)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ex) 설계파고 상향 : 설계파고 변화율 6.0m / 5.2m = 1.15 내진성능변화 : 지진가속도변화율 0.057g / 0.05g = 1.14					
			SCR	SCR<1.0	1.0≤SCR<1.1	1.1≤SCR<1.2	1.2≤SCR
			점수	0	14	17	20
			※ 기존 구조물 중 신규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은 기준배점의 85%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평가항목	적용기준	평가 방법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총당금 (3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기술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신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 (외력, 하중 등)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100점)	정책일치성 (17)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7	12	17	
	중요도 (10)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3	5	8	10		
	재해발생빈도 (13)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7	13		
	이용자 민원 (10)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5	10		
	성능개선 총당금 (5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20	30	40	50
합계	100	기술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신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 (외력, 하중 등)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사용성변화 성능개선(계류시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적용기준	평가 방법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8)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8	
	중요도 (7)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3	5	7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7)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4	7			
성능개선 총당금 (2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 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어항분야(지방어항)의 경우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는 2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시설의 안전등급이 미산정되어 관리목표 수립이 어려움. 또한, 경상북도 소관 지방어항 22개소중 일부는 준공년 기준 30년이하로 내구연한에 따른 평가도 불필요함. 따라서, 어항분야의 경우에는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안전등급을 산정한 후 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시 관리계획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서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구 분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노후화 성능개선	시설 경과연수	수도공급설비 관리그룹 분류코드 상 ③(20년~30년) ~ ④(30년이상) 시설
	진단평가 결과 (정기안전평가, 정밀안전평가, 정밀안전진단)	D~E 시설
기준변화 성능개선	내진성능기준 변경	관련기준 변경 대상시설
	그 외 관련 기준 변경	관련기준 변경 대상시설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성능평가 결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사용성능등급 D~E 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등 관련 여건 변화에 따른 사용성 변화	사용성 변화 대처 부족 시설

비고

1. 수도공급설비 관리그룹 분류코드는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21-41호, 2021.2.22) 별표1 관리그룹의 구분 참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30점)	기술진단평가 (30)	· 기반시설 진단평가 결과					
		등급	A	B	C	D	E
		점수	5	15	20	25	30
경제성 (30점)	비용절감효과 (3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5	15	20	25	3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중요도 (4)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이용자 민원 (4)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성능개선 총당금 (2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40점)	비용절감효과 (4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5	10	20	30	4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성능개선 충당금 (3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동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평가 (30)	성능평가 (30)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각각 15점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점수</td> <td>0</td> <td>0</td> <td>5</td> <td>10</td> <td>15</td> </tr> </table>						등급	A	B	C	D	E	점수	0	0	5	10	15
	등급	A	B	C	D	E													
점수	0	0	5	10	15														
정밀안전 점검·진단 (30)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점수</td> <td>0</td> <td>0</td> <td>10</td> <td>20</td> <td>30</td> </tr> </table>						등급	A	B	C	D	E	점수	0	0	10	20	30
등급	A	B	C	D	E														
점수	0	0	10	20	30														
		노후도 (30)	· 노후도(사용기간/내용연수) - 내용연수 : 별표5 참고																
		<table border="1"> <tr> <td>노후도</td> <td>40%미만</td> <td>40%이상</td> <td>60%이상</td> <td>80%이상</td> <td>100%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5</td> <td>10</td> <td>20</td> <td>30</td> </tr> </table>						노후도	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점수	0	5	10	20	30
노후도	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점수	0	5	10	20	30														
경제성 (20점)	비용절감효과 (2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table border="1"> <tr> <td>비율</td> <td>0.3미만</td> <td>0.3이상</td> <td>0.4이상</td> <td>0.6이상</td> <td>0.8이상</td> </tr> <tr> <td>점수</td> <td>12</td> <td>14</td> <td>16</td> <td>18</td> <td>20</td> </tr> </table>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12	14	16	18	20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12	14	16	18	20														
정책성 (20점)	정책일치성 (4)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불일치</td> <td>보통</td> <td>추진중</td> <td>확정</td> </tr> <tr> <td>점수</td> <td>0</td> <td>1</td> <td>2</td> <td>4</td> </tr> </table>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1	2	4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1	2	4															
		중요도 (2)	시설물 규모 (중별)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 colspan="5">2중</td> </tr> <tr> <td>점수</td> <td colspan="5">2</td> </tr> </table>						구분	2중					점수	2				
구분	2중																		
점수	2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재해발생빈도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1	2		
	이용자 민원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1	2		
	성능개선 총당금 (1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 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4	6	8	1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용연수는 별표 5를 따른다.
3. 공동구는 기술성·경제성·정책성 평가 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공동구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 가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40점)	비용절감효과 (4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5	10	20	30	4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중별)					
		구분	2종				
		점수	6				
정책성 (8)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충당금 (3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5. 하천

〈 성능개선사업의 유형별 적합성 평가기준 〉

관리 그룹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종합평가
중점 치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 안정성 저하 내구성 저하 사용성 저하 하천설계기준 불충족 기준 및 사용성 변화 유형은 기술성평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하천시설 안전도 증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배수 영향 지역의 홍수 방어확률 증가 및 손실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기본계획상 해당 시설 중요도 주민의 수용성 환경영향 등 부작용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단위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
기타 관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 퇴적으로 인한 하천기본 계획의 통수 단면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하천시설 안전도 증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수 영향지역의 홍수 방어확률 증가 및 손실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기본계획상 해당 시설 중요도 주민의 수용성 환경영향 등 부작용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단위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

비고

1. 정성적인 지표를 활용한 전문가 평가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중점치수시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평가 (30)	성능평가 (30)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각각 15점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점수</td> <td>0</td> <td>0</td> <td>5</td> <td>10</td> <td>15</td> </tr> </table>						등급	A	B	C	D	E	점수	0	0	5	10	15
	등급	A	B	C	D	E													
점수	0	0	5	10	15														
정밀안전 점검·진단 (30)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점수</td> <td>0</td> <td>0</td> <td>10</td> <td>20</td> <td>30</td> </tr> </table>						등급	A	B	C	D	E	점수	0	0	10	20	30
등급	A	B	C	D	E														
점수	0	0	10	20	30														
		노후도 (30)	· 노후도(사용기간/내용연수) - 내용연수 : 별표5 참고																
		<table border="1"> <tr> <td>노후도</td> <td>40%미만</td> <td>40%이상</td> <td>60%이상</td> <td>80%이상</td> <td>100%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5</td> <td>10</td> <td>20</td> <td>30</td> </tr> </table>						노후도	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점수	0	5	10	20	30
노후도	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점수	0	5	10	20	30														
경제성 (20점)	비용절감효과 (2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table border="1"> <tr> <td>비율</td> <td>0.3미만</td> <td>0.3이상</td> <td>0.4이상</td> <td>0.6이상</td> <td>0.8이상</td> </tr> <tr> <td>점수</td> <td>12</td> <td>14</td> <td>16</td> <td>18</td> <td>20</td> </tr> </table>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12	14	16	18	20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12	14	16	18	20														
정책성 (20점)	정책일치성 (4)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불일치</td> <td>보통</td> <td>추진중</td> <td>확정</td> </tr> <tr> <td>점수</td> <td>0</td> <td>1</td> <td>2</td> <td>4</td> </tr> </table>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1	2	4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1	2	4															
중요도 (2)		시설물 규모 (종별)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기타</td> <td>3종</td> <td>2종</td> <td>1종</td> </tr> <tr> <td>점수</td> <td>0.5</td> <td>1</td> <td>1.5</td> <td>2</td> </tr> </table>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0.5	1	1.5	2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0.5	1	1.5	2															
		재해발생빈도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피해없음</td> <td>1회</td> <td>2회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1</td> <td>2</td> </tr> </table>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1	2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1	2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이용자 민원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1	2	
	성능개선 총당금 (1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 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4	6	8	1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신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용연수는 별표 5를 따른다.

〈 기타관리시설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10점)	성능평가 (10)	성능평가 (10)	· 사용성능 등급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점수</td> <td>3</td> <td>5</td> <td>6</td> <td>8</td> <td>10</td> </tr> </table>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정밀안전 점검·진단 (10)	·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점수</td> <td>3</td> <td>5</td> <td>6</td> <td>8</td> <td>10</td> </tr> </table>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table border="1"> <tr> <td>비율</td> <td>0.3미만</td> <td>0.3이상</td> <td>0.4이상</td> <td>0.6이상</td> <td>0.8이상</td> </tr> <tr> <td>점수</td> <td>30</td> <td>35</td> <td>40</td> <td>45</td> <td>50</td> </tr> </table>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불일치</td> <td>보통</td> <td>추진중</td> <td>확정</td> </tr> <tr> <td>점수</td> <td>0</td> <td>2</td> <td>4</td> <td>6</td> </tr> </table>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4)		시설물 규모 (종별)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기타</td> <td>3종</td> <td>2종</td> <td>1종</td> </tr> <tr> <td>점수</td> <td>1</td> <td>2</td> <td>3</td> <td>4</td> </tr> </table>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2	3	4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2	3	4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피해없음</td> <td>1회</td> <td>2회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3</td> <td>6</td> </tr> </table>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4)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없음</td> <td>2회</td> <td>3회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2</td> <td>4</td> </tr> </table>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2	4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2	4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성능개선 총당금 (20)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 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중점치수시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40점)	비용절감효과 (4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5	10	20	30	4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총당금 (3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기타관리시설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table border="1"> <tr> <td>비율</td> <td>0.3미만</td> <td>0.3이상</td> <td>0.4이상</td> <td>0.6이상</td> <td>0.8이상</td> </tr> <tr> <td>점수</td> <td>30</td> <td>35</td> <td>40</td> <td>45</td> <td>50</td> </tr> </table>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8)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불일치</td> <td>보통</td> <td>추진중</td> <td>확정</td> </tr> <tr> <td>점수</td> <td>0</td> <td>3</td> <td>5</td> <td>8</td> </tr> </table>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8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8								
	중요도 (7)	시설물 규모 (종별)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기타</td> <td>3종</td> <td>2종</td> <td>1종</td> </tr> <tr> <td>점수</td> <td>1</td> <td>3</td> <td>5</td> <td>7</td> </tr> </table>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3	5	7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3	5	7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피해없음</td> <td>1회</td> <td>2회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4</td> <td>8</td> </tr> </table>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7)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없음</td> <td>2회</td> <td>3회이상</td> </tr> <tr> <td>점수</td> <td>0</td> <td>4</td> <td>7</td> </tr> </table>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4	7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4	7										
성능개선 총당금 (20)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미수립</td> <td>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td> <td>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td> <td>조례제정</td> <td>총당금 확보</td> </tr> <tr> <td>점수</td> <td>0</td> <td>8</td> <td>12</td> <td>16</td> <td>20</td> </tr> </table>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6. 저수지

〈 적합성 판단을 위한 종합평가 〉

○ 종합점수 : 기술성 평가 점수 + 경제성 평가 점수 + 정책성 평가 점수

지구명	표준 코드	시설명	유형별	평가 항목(100점)						종합 점수	우선 순위
				기술성 평가 (60)	경제성 평가 (10점)	정책성 평가(30점)					
						활용도 (5점)	중요도 (5점)	수용도 (5점)	총당금 (15점)		

비고

1. 내진보강 대상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평가등급 D·E 저수지는 종합 점수를 100점으로 적용하고 동 저수지간 우선순위는 경제성·정책성 평가 결과높은 점수 순(동일한 점수인 경우 경제성>활용도>중요도>수용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상기 1항 외 종합점수가 동점인 저수지는 기술성>경제성>활용도>중요도>수용도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유형별은 노후화(제14조제1항제1호), 기준변화(제14조제1항제2호), 사용성변화(제14조제1항제3호), 혼합형(성능개선 유형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한다.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술성 평가 지표〉

평가 등급	시설상태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복 합 시 설	제체 D·E등급	60.0			
㉡		여수로 D·E등급	55.0			
㉢		취수시설 D·E등급	50.0			
㉣	제체(복합부재) D·E등급		45.0			
㉤	개 별 시 설	복통(터널) D·E등급	40.0			
㉥		물넘이, 방수로 D·E등급	35.0			
㉦		감세공, 사통(취수탑) D·E등급	30.0			
㉧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및 등급		25.0			

비고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종합, 복합시설, 개별시설 및 제체(복합부재)의 안전 등급에 따라 기술성 평가 등급 및 배점 부여
-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포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등급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최고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적합성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구 분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평가점수 산출기준	1순위 10점, 최하위순위 5점을 부여하며, 중간순위의 점수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비고

- 저수지 수혜면적(ha)과 침수피해인원(명)을 고려하여 산출(수혜면적×0.3 + 침수피해인원 ×0.7)하고, 산출점수가 높은 저수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책성 평가〉

① 저수지 활용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주수원공	5.0			
㉡	보조 수원공	4.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지역주민 활용공간 이용	3.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수혜면적 있음	2.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수혜면적 없음	1.0			

② 저수지 중요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세부평가표 참조	5.0			
㉡	세부평가표 참조	4.0			
㉢	세부평가표 참조	3.0			
㉣	세부평가표 참조	2.0			
㉤	세부평가표 참조	1.0			

〈세부평가표〉

구 분		유역면적				
총저수용량	제체높이	100ha 미만	100ha~ 500ha미만	500ha~ 1,000ha미만	1,000ha~ 2,500ha미만	2,500ha 이상
30만m³미만	15m미만	㉤				
	15m이상					
30만³이상~ 50만³미만	15m미만	㉣				
	15m이상					
50만³이상~ 100만³미만	15m미만					
	15m이상					
100만³이상~ 300만³미만	15m미만	㉣				
	15m이상					
300만³이상~ 500만³미만	15m미만	㉣	㉣		㉠	
	15m이상					
500만³이상	15m미만	㉣	㉣		㉠	
	15m이상					

③ 지역주민 수용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㉗	주민호응이 좋고 민원 발생이 없는 경우	5.0			
㉘	주민호응은 좋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0			
㉙	주민호응도가 떨어지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1.0			

④ 성능개선 총당금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확보
점수	0	6	9	12	15

〈적합성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구 분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평가점수 산출기준	1순위 40점, 최하위순위 20점을 부여하며, 중간순위의 점수는 직선보간 법으로 산정(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비고

1. 저수지 수혜면적(ha)과 침수피해인원(명)을 고려하여 산출(수혜면적×0.3 + 침수
피해인원 ×0.7)하고, 산출점수가 높은 저수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책성 평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① 저수지 활용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주수원공	10.0			
㉡	보조 수원공	8.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지역주민 활용공간 이용	6.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수혜면적 있음	4.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수혜면적 없음	2.0			

② 저수지 중요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세부평가표 참조	10.0			
㉡	세부평가표 참조	8.0			
㉢	세부평가표 참조	6.0			
㉣	세부평가표 참조	4.0			
㉤	세부평가표 참조	2.0			

〈세부평가표〉

구 분		유역면적				
총저수용량	제체높이	100ha 미만	100ha~ 500ha미만	500ha~ 1,000ha미만	1,000ha~ 2,500ha미만	2,500ha 이상
30만m³미만	15m미만	㉤				
	15m이상					
30만³이상~ 50만m³미만	15m미만	㉣				㉢
	15m이상					
50만³이상~ 100만m³미만	15m미만					
	15m이상					
100만³이상~ 300만m³미만	15m미만	㉣				㉡
	15m이상					
300만³이상~ 500만m³미만	15m미만	㉣	㉡			㉠
	15m이상					
500만³이상	15m미만	㉣	㉡			㉠
	15m이상					

③ 지역주민 수용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주민호응이 좋고 민원 발생이 없는 경우	10.0			
㉡	주민호응은 좋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6.0			
㉢	주민호응도가 떨어지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0			

④ 성능개선 총당금

구분	미수립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총당금확보
점수	6	12	18	24	30

7. 하수도

〈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기술성평가		A	B	C	D	E	
		40	5	10	20	30	40	
2	경제성평가	30	A	B	C	D	E	
			5	15	20	25	30	
3	정책성평가	30	A	B	C	D	E	
			5	15	20	25	30	
계		100						

① 기술성

- 하수관로

성능 평가등급		A	B	C	D	E
하수관로	구조적 상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리적 상태	-				통수능 부족 역단차
평가점수		5점	10점	20점	30점	40점

-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 평가등급		A	B	C	D	E
공공하수 처리시설	구조적 상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처리성능 상태	3	-	2	-	1
평가점수		5점	10점	20점	30점	40점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성능 상태” 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따른 설비상태 등급을 말한다.

② 경제성

비용절감효과*	1% 이하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A	B	C	D	E
평가점수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 \text{비용절감효과} = \frac{\text{연간 유지관리비} - \text{연간 성능개선비용}}{\text{연간 유지관리비}}$$

③ 정책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3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3)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0.5	1	2	3		
	재해발생빈도 (3)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1.5	3		
	이용자 민원 (3)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1.5	3		
	성능개선 충당금 (15)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6	9	12	15

〈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경제성평가		A	B	C	D	E	
		50	10	20	30	40	50	
2	정책성평가	50	A	B	C	D	E	
		50	10	20	30	40	50	
계		100						

① 경제성

비용절감효과*	1% 이하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A	B	C	D	E
평가점수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 \text{비용절감효과} = \frac{\text{연간 유지관리비} - \text{연간 성능개선비용}}{\text{연간 유지관리비}}$$

② 정책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7)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점수	불일치 0	보통 3	추진중 5	확정 7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점수	기타 1.5	3종 3	2종 4.5	1종 6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점수		피해없음 0	1회 3	2회이상 6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점수	없음 0	2회 3	3회이상 6		
성능개선 총당금 (25)	구분 점수	미수립 0	총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10	총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15	조례제정 20	총당금 확보 25

〈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경제성평가		A	B	C	D	E	
		50	10	20	30	40	50	
2	정책성평가	50	A	B	C	D	E	
			10	20	30	40	50	
계		100						

① 경제성

비용절감효과*	1% 이하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A	B	C	D	E
평가점수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 \text{비용절감효과} = \frac{\text{연간 유지관리비} - \text{연간 성능개선비용}}{\text{연간 유지관리비}}$$

② 정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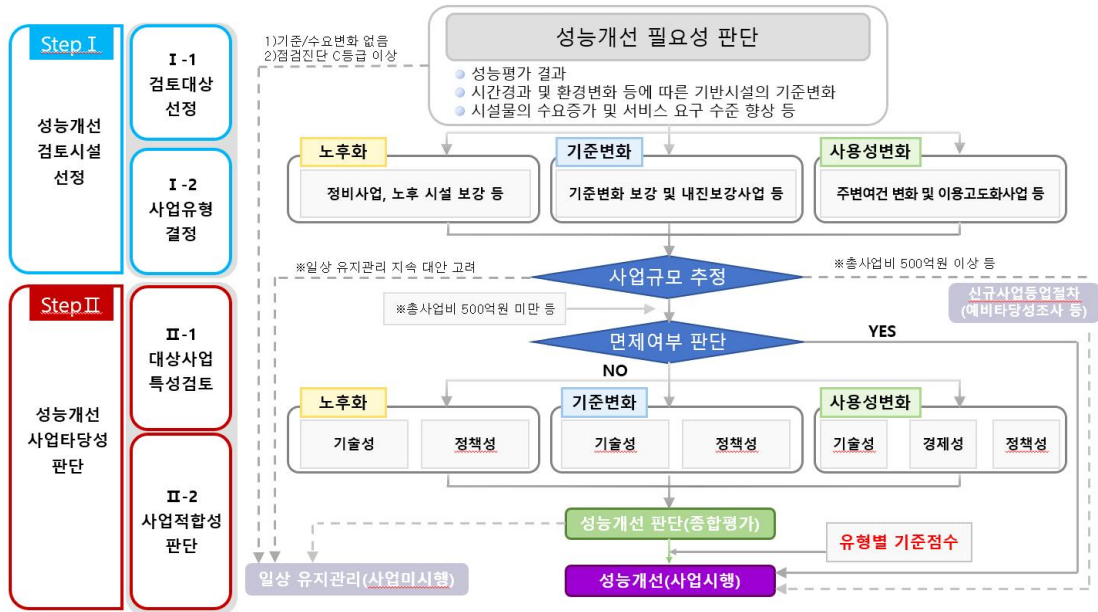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7)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7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총당금 (25)	구분	미수립	총당금	총당금	조례제정	총당금
			마련방안	마련방안		
점수	0	10	수립중	수립 완료	20	25

[별표 8]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항목(제16조 관련)

구 분		항 목
기술성	1	시설 관련 기술기준 변동성(설계기준, 공사시방 등)
	2	시설용량, 규모 적정성
	3	시설 노후도(준공이후 경과연수), 성능평가 결과
수요	4	시설 사용(활용) 수요(용수 수요 등)
	5	기타 유발 수요(방문객수 등)
비용	6	개량사업비
	7	부대비(조사 및 측량비,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비, 설계비, 설계 감리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보험료 등)
	8	보상비(용지매입비, 용지보상비, 기타보상비 등)(필요시)
	9	운영비(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10	장비/차량구입비(운영설비비)
	11	기타(환경비용)
경제성	12	시설 사용자 부담비용 절감(사용료 등)
	13	시설 사용자 편리성 증대(용수공급 등)
	14	안전사고 감소
	15	환경비용 절감
	16	주민 불편성(공사중 교통 혼잡성, 공간 침해 영향)
	17	시설구조 고도화
	18	시설사용 활성화/피해방지(교통운행 영향성 등)
	19	재해복구 용이성
	20	재해피해 경감(홍수 등)
	21	제공 서비스품질 향상(수질개선 약취 등 보건위생 향상 등)
	22	시설 사용자 서비스 확대(경관, 레저제공 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23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24	중요도(시설물 규모(종별))
	25	재해발생빈도(최근 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26	이용자 민원(최근 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27	성능개선 총당금 마련

[참고] 성능개선사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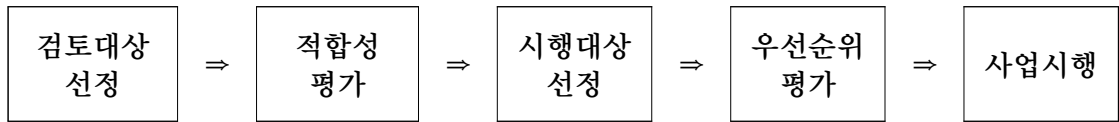
1) 타당성 판단 절차



2) 유형별 성능개선사업 타당성 판단유형 분류 (예)

시설유형		정형화된 타당성 판단	정책적 판단으로 같음
개량 및 개선시설	수자원 및 수도	수자원 및 상수도 시설개선	노후상수도 단순개량
	도로	도로확장	도로 단순 유지보수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시설

3) 성능개선 사업의 관리절차



(1) 검토대상 선정

- 공용년수 30년 이상, 관리등급 D, E등급 미만, 안전율 1.0 이하

(2) 적합성 평가

- 타 사업 현황, 개량 및 개선사업간 중복성, 관리주체 의견, 공사이력 등 고려하여 기본대상 적정성 평가

(3) 시행대상 선정

- 사업 시행대상 선정 흐름도에 따라 점검진단 이력, 공용내하력 평가, 경제성 평가, 관리주체 시급성 평가 등과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별 선정

4) 우선순위 평가

- 사업별 세부 평가 항목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해 기본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평가값 산정 및 기본우선순위 산정 수행
- 기본우선순위와 관리주체 의견(민원사항, 향후 사업계획 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
- 기본우선순위 산정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5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인비남계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거점으로 육성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 업 개 요	사 업 시행자
	시군	읍면			
인비 남계 지구	포항	죽장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정 4개소 ○ 저수조(100Ton) 4개소 ○ 송수관로(D=50mm) 4조, L=1,075m ○ 급수관로(D=50~65mm) 11조, L=10,653m ○ 농로(B=3.0m) 2조, L=333m 	포항시장

3. (사업비) 1,645,250천원(국비 1,316,000, 지방비 329,250)

4. (사업예정기간) 2021. 01. ~ 2022. 12.

5. (사업효과) 저비용 고효율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6.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의 세목조서) 사업시행기관(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및 조서와 같음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6호

선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선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평야부 우량농지 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형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북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일원
- 사업면적 : 구역면적 : 14.5ha, 수혜면적 : 12.1ha
- 사업개요
 - 구 획 : 장변100m 단변20m (평균 2,000㎡) 65필지
 - 용 수 로 : 7조 1,744m (구조물화 100%)

- 배 수 로 : 6조 1,255m (구조물화 100%)
- 도 로 : 1조 607m

3. 총 사업비 : 1,98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2. 9. ~ 2023. 6.

5. 사업효과 :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기여

6. 사업시행자 : 의성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7. 기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30-8160)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7호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의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47	913,966	48	935,926	39	871,200	39	871,200
소 공원	11	18,611	11	18,611	8	10,205	8	10,205
근 린 공 원	9	664,864	9	664,864	8	653,786	8	653,786
어린이공원	15	62,134	15	62,134	12	58,827	12	58,827
체 육 공 원	1	13,165	1	13,165	1	13,165	1	13,165
역 사 공 원	1	24,343	1	24,343	1	24,343	1	24,343
문 화 공 원	1	19,975	2	41,935	-	-	-	-
수 변 공 원	9	110,874	9	110,874	9	110,874	9	110,874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예누리 문화 공원	문화 공원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	-	증) 21,960	21,96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예누리 문화공원	· 공원신설 A = 21,960m ²	·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향유와 산책하기 좋은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예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T.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15조 ·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사유

- 현 도로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4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15조 · 제16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을 해제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연장 (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 결정 (변경) 이유	⑧ 비고
현구역	국지도	32호선 (대전~ 문경)	시점 : 함창읍 대조리 324-3 종점 : 함창읍 대조리 324-4	61	없음	현 도로여건 반영 (지적선과 일치)	
변경 구역	국지도	32호선 (대전~ 문경)	시점 : 함창읍 대조리 324-3 종점 : 함창읍 대조리 372-1	57	없음		

3. 접도구역 해제 내용

도로의 종류	국지도	노선번호	32호선	노선명	국지도32호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시점 :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324-4 종점 :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370 (약 0.6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3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으로 주민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접도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비 고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제재 생략)

- ※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
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 국지도 32호선 -

도입번호: 환경3885067, 3885068



금회 변경 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법 레

1. 도로구역	2. 변경도로구역	3. 변경접도구역	4. 기정도로구역	5. 기정접도구역
6. 도로구역	7. 변경도로구역	8. 변경접도구역	9. 기정도로구역	10. 기정접도구역
11. 도로구역	12. 변경도로구역	13. 변경접도구역	14. 기정도로구역	15. 기정접도구역
16. 도로구역	17. 변경도로구역	18. 변경접도구역	19. 기정도로구역	20. 기정접도구역
21. 도로구역	22. 변경도로구역	23. 변경접도구역	24. 기정도로구역	25. 기정접도구역
26. 도로구역	27. 변경도로구역	28. 변경접도구역	29. 기정도로구역	30. 기정접도구역
31. 도로구역	32. 변경도로구역	33. 변경접도구역	34. 기정도로구역	35. 기정접도구역
36. 도로구역	37. 변경도로구역	38. 변경접도구역	39. 기정도로구역	40. 기정접도구역
41. 도로구역	42. 변경도로구역	43. 변경접도구역	44. 기정도로구역	45. 기정접도구역
46. 도로구역	47. 변경도로구역	48. 변경접도구역	49. 기정도로구역	50. 기정접도구역
51. 도로구역	52. 변경도로구역	53. 변경접도구역	54. 기정도로구역	55. 기정접도구역
56. 도로구역	57. 변경도로구역	58. 변경접도구역	59. 기정도로구역	60. 기정접도구역
61. 도로구역	62. 변경도로구역	63. 변경접도구역	64. 기정도로구역	65. 기정접도구역
66. 도로구역	67. 변경도로구역	68. 변경접도구역	69. 기정도로구역	70. 기정접도구역
71. 도로구역	72. 변경도로구역	73. 변경접도구역	74. 기정도로구역	75. 기정접도구역
76. 도로구역	77. 변경도로구역	78. 변경접도구역	79. 기정도로구역	80. 기정접도구역
81. 도로구역	82. 변경도로구역	83. 변경접도구역	84. 기정도로구역	85. 기정접도구역
86. 도로구역	87. 변경도로구역	88. 변경접도구역	89. 기정도로구역	90. 기정접도구역
91. 도로구역	92. 변경도로구역	93. 변경접도구역	94. 기정도로구역	95. 기정접도구역
96. 도로구역	97. 변경도로구역	98. 변경접도구역	99. 기정도로구역	100. 기정접도구역

교통시설	1. 도로구역	2. 변경도로구역	3. 변경접도구역	4. 기정도로구역	5. 기정접도구역
------	---------	-----------	-----------	-----------	-----------

축척 1:1,000

국지이용규격기준, 제8호 및 동년 시행령 제 3호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국토정보위원회(국토정보위원회)에 등록함.
확정일: 2022년 10월 6일

- 지정권자: 경상북도지사
- 지정일자: 2022년 월 일
- 고시일자: 2022년 월 일
-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22- 호
- 작성자: (주)해동기술개발공사 전무이사 이주현
- 작성일자: 2022년 월 일
-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고시 제2022- 호
2022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권한사항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색인도

문경 056	문경 057	문경 058
문경 066	문경 067	문경 068
문경 076	문경 077	문경 078

경상북도 고시 제 2022-289호

개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개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 목적 : 노후화된 용·배수로의 구조물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현대화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일원
- 수혜면적 : 357ha
- 사업개요 : 용·배수로 16조 L=8.2km

3. 사업비소요액 : 4,348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2. 12. ~ 2026. 12.

5. 사업효과 : 관개개선, 영농환경개선, 시설물안정 및 재해예방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054-950-0741)에서 비치
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290호

법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사업의 목적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배수장, 배수로를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일원
- 수혜면적 : 53.3ha
- 사업계획개요
 - 배 수 장 : 1개소($Q=4.0\text{m}^3/\text{s}$)

- 배 수 로 : 4조 L=1.1km

- 매 립 : 3.9ha

3. 사업비소요액 : 6,310백만원

4. 사업 예정기간 : 2022. ~ 2025.

5. 사업의 효과

○ 편익비용비율(B/C) : 1.05%(4.5%할인시)

○ 내부투자수익율(I.R.R) : 4.9%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7. 기타 : 관련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성주농어촌사업(054-930-0476)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70호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된 부동산개발업을 「같은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소재지	말소일자	폐업사유
경북210003호	(주)부강홀딩스 (이재학)	170111-073445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489번길 9, 401동 109호	2022.09.28	사업포기
경북210006호	원성건설(주) (최금평)	171111-0008045	경북 안동시 옥동3길 52, 2층	2022.09.28	사업포기

끝.

경상북도 공고 제 2022-1688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918호선 (봉화~영해)
공사의 종류	교차로 신설		
구 간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55번지 일원		
공사시행장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영양소방서 신축에 따른 교차로 신설		
착수예정일	2021년 08월	준공예정일	당초 : 2021년 12월 31일 변경 : 2023년 7월 25일
사유 : 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92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 선 명	국지도90호선 (울릉일주도로)
공사의 종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피암터널 설치		
공 사 구 간	울릉군 북면 현포리(L=92m), 서면 남서리(L=80m) 일원		
시 행 장 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낙석 우려 지구에 피암터널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 유지관리 목적		
착수예정일	2022년 10월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25일



시 군

고 시

김천시 고시 제2022-125호

김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일원에 아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아포1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공공 청사	국사리 126-1 번지 일원	-	증)3,799	3,799	-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아포1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 공공청사 신설 A = 3,799㎡	· 기존 아포읍행정복지센터의 공간협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의 차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청사를 신설함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건설도시과(054-420-6427)와 회계과(054-420-6135)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안동시 고시 제2022-1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안 동 시 장

1. 사업명칭 : 안동시 용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어반산업개발 대표 조성민
- (주)담소종합건설 대표 안선택

나. 주 소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49, 104호(신용동, 첨단자이1차상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21, 501호(용두동)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527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민간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5,970.00m² ○ 대지면적 : 5,796.00m² ○ 건축면적 : 1,425.3090m² ○ 건축연면적 : 9,866.6275m² ○ 건 폐 율 : 24.59% ○ 용 적 률 : 163.35% ○ 건설규모 : 아파트 10층, 2동, 89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13,404,2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3. 09. 3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명 칭	용상동 공동주택	좌 동	
사업계획승인	2016. 07. 20.	좌 동	
착공(예정)일자	2022. 02. 01.	좌 동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위치	안동시 용상동 527번지		좌 동		
사업주체	(주)어반산업개발 (주)담소종합건설		좌 동		
시 공 자	도원종합건설(주)		(주)송정종합건설		변경
대지면적	5,796m ²		좌 동		
건축면적	1,425,309m ²		좌 동		
연 면 적	9,866.6275m ²		좌 동		
건 폐 율	24.59%		좌 동		
용 적 률	163.35%		좌 동		
주택형별 (전용) 및 세대수	84형	89세대	좌 동	좌 동	
	-	-	-	-	
	계-----89세대		좌 동		
사 업 비	13,404,200천원		좌동		
사용검사 예정일	2023. 09. 30.		좌 동		
주차대수	116대		좌 동		
층 수	지하1 / 10		좌 동		
동수(주/부)	2 / 2		좌 동		
조경 면적	890m ²		좌 동		
기 타	- 시공자 변경 : 도원종합건설(주) ⇒ (주)송정종합건설				

8. 관계서류는 안동시청 건축과 (☎054-840-54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시 군

공 고

문경시 공고 제2022-1412호

건설기계 검사명령 공시송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0. 6.

문 경 시 장

1. 공고기간 : 2022.10.6.~2022.10.20.(15일간)
2. 공고대상 : 검사명령 서면통지 미송달 건설기계(붙임 참조)
3. 공시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인 2022.10.20.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문경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54-550-6157)

〈검사명령 공시송달 대상 건설기계〉

연번	건설기계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또는 사용본거지)	비고
1	경북09나2901	(주)한***	경상북도 문경시**** (**동)	
2	경북06고1024	세****(주)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 ** 산 ***번지 *호	
3	경북03나2936	홍***(주)	경상북도 문경시 *** **-(**동)	
4	경북04-4059	조*제	경상북도 문경시 *** ** 산 **번지	
5	경북04나3755	(주)*신	경상북도 문경시 *** 산 *번지 *호	
6	경북04고2511	권*란	경상북도 문경시 *** ** *	
7	경북18나6903	동***(주) 이*애	경상북도 문경시 **** **-(**동)	
8	경북04-1544	박*수	경상북도 문경시 *** **번지	
9	경북02고2128	주식회사 ****	경상북도 문경시 **** **-(**동)	
10	경북04고3734	김*완	경기도 남양주시 *** ***** **	
11	경북04노1124	문경****(주)	경상북도 문경시 *** ***** *	
12	경북02-1754	유*** (조*제)	전라북도 무주군 *** ***** ***-***	
13	경북03-1162	정*훈	경상북도 문경시 **** **-(**동)	
14	경북02나2946	이*정	경상북도 문경시 *** ** 산 **번지 *호	
15	경북02-1649	범****(주) 윤 *	경상북도 문경시 *** ** 산 **번지 *호	

연번	건설기계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또는 사용본거지)	비고
16	경북02노6110	이*우	경상북도 문경시 *** ** *_*, ****(*****)	
17	경북02도5146	김*기	경상북도 문경시 **** *, **** ****(**동, *****)	
18	경북04노3949	홍*일	경상북도 문경시 *** **, ** ****(**동, *****)	
19	경북04도1631	홍*예	경상북도 문경시 **** **_**(**동)	
20	경북04나2955	보*** (이*규)	경상북도 문경시 **** **_**(**동)	

고령군 공고 제2022-1119호

고령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 완료 공고

고령군 군계획시설(군청청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고령군수

1. 사업의위치 :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19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청사
- 명 칭 : 공공청사(군청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종 류	명 칭	위 치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 고
			사업시행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계획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청사)	고령 군청사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190번지 일원	23,640㎡	2,896.8㎡	9,446.04㎡	1990.01.06 ~ 2022.12.3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고령군수
-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5. 사업시행기간 : 1990. 1. 6. ~ 2022. 12. 31.

6. 공사 완료일 : 2022. 6. 27.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활력과 도시시설담당(☎054-950-6782)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44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6.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631번지 외 10필지 일원 면적 : 165㎡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지반조사 ○ 시설개요 : - 시추조사 11공 (Ø76mm, 깊이 20m, 소구경 굴진)
점 용 기 간	2022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경북의 새로운
힘으로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한세상**